

파주시취업정보센터등설치운영조례안

의안 번호	16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5. 10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□ 제안이유

IMF경제체제 이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대량 실업확대를 방지하고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에서 운영하는 광역고용정보전산망(WORK-NET)이 '99년 3월 구축됨에 따라 구인·구직인증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취업정보센터 및 일일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취업알선 및 실업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가. 파주시 시정정보센터내에 취업정보센터 및 일일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에서는 상용직 및 일용직 구인·구직자에 대한 직업소개, 직업정보의 제공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. (안제2조·제4조)
- 나. 센터에는 직업안정법에 의한 민간 직업상담원을 두되 취업정보센터에는 2인이내, 일일취업지원센터에는 3인이내의 상담원을 두도록 함. (안제6조)
- 다. 상담원의 선발은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서류전형·전산능력시험 및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하도록 함. (안제8조)
- 라. 상담원은 시장이 채용하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며, 1년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. (안제9조)
- 마. 상담원의 보수·복무등 필요한 사항은 직업안정법 및 노동부직업상담원규정을 준용하도록 함. (안제10조)

파주시취업정보센터등설치운영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관내 주민의 고용안정을 위한 상용직 및 일용직근로자등에 대한 취업알선과 실업대책을 위한 종합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파주시취업정보센터 및 일일취업지원센터(이하“센터”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센터는 파주시 시정정보센터내에 둔다.

제3조(운영) 센터는 시장이 관리·운영한다.

제4조(업무) ①센터에는 취업정보센터와 일일취업지원센터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취업정보센터: 상용직 구인·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직업소개, 직업지도, 직업정보의 제공 및 실업대책에 대한 상담안내

2. 일일취업지원센터: 일용직 구인·구직자에 대한 구인·구직 신청, 상담 및 알선, 직업지도, 정보제공 및 실업대책에 대한 상담안내 등

②센터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등의 반대급부를 징수할 수 없다.

제5조(상담창구의 설치) 센터에는 다음 각호의 상담창구(이하“창구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1. 취업정보센터: 취업알선상담창구, 실업대책지원창구

2. 일일취업지원센터: 취업알선상담창구, 실업대책지원창구

제6조(상담원의 배치)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별 상담창구에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민간직업상담원(이하“상담원”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

②각 창구별로 둘 수 있는 상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취업정보센터 : 2인이내

2. 일일취업지원센터 : 3인이내

③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담실장을 둘 수 있으며 상담실장은 기업지원과장이 겸임하거나 민간인중에서 상근 또는 비상근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7조(상담원의 자격기준) 상담원의 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.

제8조(상담원의 선발) ①센터에 두는 상담원을 선발할 경우에는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서류전형, 전산능력시험 및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한다.

②시장은 필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발방법중 전산능력시험의 경우 자격중에 의한 서류전형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③상담원의 선발을 위하여 선발심사위원회를 두되 파주시 인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.

제9조(상담원의 채용) ①상담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시장이 채용하되,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단 근로계약의 만료일은 항상 12월 31일로 한다.

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다시 1년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③시장은 상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

2. 신체·정신적인 장애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
3. 허위 또는 사기의 방법에 의해 상담원으로 선발된 경우
4. 직무수행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업무태도가 불량한 경우
5. 업무상 또는 업무외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

제10조(다른규정의 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외에 상담원의 보수·복무등 필요한 사항은 직업안정법 및 노동부직업상담원규정을 준용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기업지원과 ☎ 940-4284
입 안 자	기업지원과장	홍 덕 기
	기업육성담당	윤 복 용
	담 당 자	이 성 용

상담원의 자격기준

구 분	자 격 기 준
취업정보센터 상 담 원	○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. 직업안정법에 의한 구인·구직자에 대한 국내직업소개·직업 지도·직업정보의 제공업무에 6월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. 직업상담원 또는 직업상담훈련과정수료증 소지자 다.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라. 초·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,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, 직업지도, 직업훈련, 기타 직 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 는 자 마. 기타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또는 실업대책상담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
일일취업지원 센터상담원	○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교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자 가. 직업안정법에 의한 국내 직업소개·직업지도·직업정보의 제공 업무에 6월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. 노동조합업무 또는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.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○ 기타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또는 실업대책상담업무를 수행할 능 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